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0. 06.

영등포구 도시재생과

제안이유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업의 필요성

(가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공연문화 인프라 구축

- 서남권의 부족한 문화시설 확충
→ 서남권 시민 뿐만 아니라 구민의 문화 인프라 구축

도심 위상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문화시설 조성
- 문화도심 위상 강화
- 집객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투자 안정적 건립·운영

- 건립비 약 1,626억원
- 운영비 연간 110억원
- (재)세종문화회관 운영
→ 수준 높은 공연 서비스 제공

추진경위

'01.10.12	• 방림방적 시가지조성사업 기부채납 (구유지)
'19.02. ~ 12.	•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市)
'19.12.31.	•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기본계획」 시장방침(市)
'20.01.21.	• 공연장 건립 관련 업무협약 체결 요청(市)
'20.03. ~	•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검증 중(市) (수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19.	• 타당성 검증 관련 현장실사 (시, 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종문화회관)
'20.05.29.	• 영등포구 공유재산심의회

건립개요

- 규 모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27,930㎡)
 - ※ 설계과정에서 지하, 지상 층수와 연면적 변동 가능
- 용 도 : 대공연장(2,014석), 소공연장(300석), 문화 및 지원시설
- 건립 / 운영주체 : 서울시 / (재)세종문화회관
- 총 사업비 / 운영비 : 약 1,626억원 / 연간 110억원 (전액 시비)



※ 상기 구상안은 변경될 수 있음

구 상 안

향후 추진 계획

'20.07.	시 - 구 공연장 건립 관련 MOU 체결 (건립 및 운영, 사업비, 토지무상사용 승인 등)
'20.10.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검증 완료(市)
'21. ~ '22.06.	시·중앙 투자심사, 국제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市)
'22.07. ~ '25.09.	공사시행(市)
'25.12.	공연장 개관